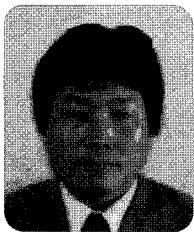


특**집**

친환경 양돈산업, 어디까지 왔나?

친환경 양돈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김 강 희 친환경축산팀장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친환경을 축산업계의 화두이다.

“친환경”이란 모든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다. 요즘 화두에 친환경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정도다. 축산업 전반에서 친환경을 외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정부는 친환경육성법을 제정하여 농약과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농업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축분뇨 자원화하여 경종농가에 비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 경종농가가 부산물비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구입자금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를 경종농가가 작물재배에 이용하도록 순환체계 농업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 정책이 오염물질로 홍보되어 경종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오염물질로 보고 있으며 또한 작물에 재배하는 농가에 가축분뇨가 유입되면 오염물질로 인식하여 고발하는 사태가 종종 있었다. 정부가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보지 않고 오염물질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경종농가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가축분뇨는 최고의 비료

또한 가축분뇨에 항생제 및 소독제가 있어서 가축분뇨로 만든 부산물 퇴비를 유기농업을 하는 유기농작물에 올해부터 사용을 못하도록 하여 가축분뇨로 만든 비료의 소비가 둔화되고 일반농업을 하는 농가까지 사용을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96년부터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하자 하면서 토양 살리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료의 3요소가 아니라 토양내 유기물함량을 현행 2.4('96)에서



3.0(2013) 목표를 하고 있다. 여기서 본다면 정부가 목표를 하고 있는 유기물함량에 높이는 데에는 유기자재는 가축분뇨가 최고의 자재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축분뇨는 자원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가축분뇨가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로 인식된 것은 경종농가에게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것은 축산농가가 토양으로 환원하고자 할 때에 경종농가가 원하는 양질비료의 공급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부서내에서 공장형 축분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정부가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면서 자연순환농법을 거부하는 꼴이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친환경 농업육성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번에 ‘공장형 축분’에 대한 사항을 법 시행규칙 개정시에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속에 환경과 더불어 사는 축산업

정부는 작년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유지를

위하여 축산업을 환경과 조화시킴으로서 환경 보전,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농가소득 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환경에 대한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유지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최소화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농림부가 소모성질병인 4P를 ‘공공의 적’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부는 수의과학검역원과 축산연구소로 하여금 질병발생 농장과 청정농장의 차이점을 분석토록 한 결과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돼지 입장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사육시설을 짓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 밀사에 의한 환기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밀사시킴으로 인해 손실액이 더 커질 수 있다.

적정사육두수를 키워야 하는데 현 농가들

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친환경 축산직불제에서 농가들이 호응이 적은 이유는 농가들이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하고자 할 때에 돼지 1마리당 키우는 면적이 기존보다 좀 넓어지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농가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보상금이 보다 확대되어야만 친환경 축산직불제 역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지속적 양돈업 영위위해 자연순환농업 필수

양돈농가들이 축산업을 하고자 할 때에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다.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축사를 이전하려고 하여도 쉽지 않다. 특히 양돈장을 설치를 하려고 할 때에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설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인근주민들이 가축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여 양돈업을 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신규축사를 설치를 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시·군단위에서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와 가까이 있어야 가축분뇨를 최소경비로 자원화 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에 축사를 설치하려고 해도 농지심사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지에 축사를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행위를 보면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농지개량사업 또는 용수개발 사업의 시행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지에 축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축

사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물을 더럽혀 작물이 자라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축사를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농지법 개정시 농업진흥지역내에 축사설치를 하기 위하여 임시국회에 상정을 했지만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일단 빠진 채로 통과되었다.

쌀도 식량이고, 고기도 식량이다

농림부는 축사를 농업용 시설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축산폐수발생에 따른 환경오염과 축사의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폐해, 우량농지의 감소 또는 훼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는 것은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식량을 소비패턴을 보면 쌀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소비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농지에 생산되는 쌀도 식량이고, 축사에서 생산되는 고기도 식량이다. 따라서 식량 보전차원이 같으므로 축사의 부지도 농지로 인정하여 축산업도 농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농가가 앞에서 농림부 관계직원이 지적한 것을 불식되도록 노력을 하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비료를 생산하면 토양을 살리는 유용한 자원이란 것을 홍보를 하고 또한 농촌산하 연구기관에서는 가축분뇨 퇴비·액비에 대한 연구를 하여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림부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구태의 연하게 옛것을 지키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가 화학비료사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

제까지 화학비료 보조금을 주고 있던 것을 2005년 7월 1일부터 중단한다는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40년 동안 화학비료로 사용하여 척박해진 농지를 가축분 퇴비를 통해 농지를 보전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농지보전지역 축사를 설치 시에 자원 순환형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홍보하여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 조속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종 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원순환농업을 하면 이득이 있다는 당위성을 홍보를 하여야 한다. 축산업계에서도 친환경양돈업을 할 수 있도록 악취를 저감시키는 친환경축사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양축농가들은 잠을 편히 잘 수 없다. 가축을 사육하면 나는 냄새를 가지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3년 이상 발생할 경우, 시군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냄새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개발·보급과 양축농가들이 냄새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지원근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분자원화 촉진, 순환농업에 큰 기여할 것

작년에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대책”을 수립하면서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중에서 축산에 관련된 것만을 별도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입안하기로 하여 입법예고가 되었다. 입법예고 내용 중 “축산폐수와 축산분뇨”를 “가축분뇨”로 용어를 전환하여 가축분뇨자원화로 유도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앞으로 순환농업을 하고자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양분총량에 의한 적정사육두수 유지는 정부가 정책화하고자 하는데 있어 화학비료를 대폭 감축하고 가축분뇨에서 부족한 부분을 화학비료로 보완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축사육두수를 줄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다.

밀집사육 지역의 규제문제 역시 밀집사육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축산을 하기 좋은 곳으로, 그 지역에서는 민원 발생이 없어 축산을 영위하기 좋은 곳이라는 반증이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육두수를 늘이기가 어렵게 된다면 이것은 모순이며, 실질적으로 축산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여도 민원으로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밀집지역을 규제를 하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벌칙을 기준법보다 강화하는 것도 문제이다. 서로 상생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해놓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은 양축농가를 기만하는 것이다. 벌칙은 기준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원순환농업으로 친환경 축산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이웃주민들에게서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축산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축산농가는 축사주변에 나무를 심고 노천에 야적된 분뇨가 없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등 이웃주민들을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돈